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
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9일

3. 제안이유

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·학술적 가치공유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자생하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호수의 보호와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
다. 보호수 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라. 보호수 관리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마.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의 사무 위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보존할 가치가 있는 100년 이상의 노목과 거목, 희귀목 등과 같은 보호수는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, 도내에는 총 1,211본이 지정되어 있음.

[시군별 보호수 지정현황] * '23년 6월 기준

▷ 지정 현황 : 803개소 1,211본

구 분	총 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지정개소	803	149	104	72	69	38	53	25	45	119	83	46
지정본수	1,211	167	262	86	164	38	64	36	54	159	83	98

▷ 보호수 현황 : 34종 1,211본

(단위 : 본)

구 분	총 계	느티나무	소나무	은행나무	버드나무	향나무	기 타
합 계	1,211	695	271	62	34	24	125
청주시	167	100	9	32	11	2	13
충주시	262	125	88	4	1	4	40
제천시	86	40	35	2	1	2	6
보은군	164	57	88	4	8	-	7
옥천군	38	25	2	2	4	-	5
영동군	64	47	8	2	2	-	5
증평군	36	22	-	4	2	-	8
진천군	54	38	-	5	1	8	2
괴산군	159	120	24	5	1	4	5
음성군	83	67	2	2	3	4	5
단양군	98	54	15	-	-	-	29

※ 기타 : 125본(말채37, 팽16, 회화7, 느릅12, 상수리8, 엄나무8, 시무6, 층층5, 옷나무4, 돌배1, 모과2, 구지뽕2, 물푸레2, 떡갈2, 아그배1, 측백1, 고로쇠1, 갈참1, 산수유1, 참나무1, 배롱1, 탕자1, 개잎갈1, 비술1, 보리자1, 개비자1, 뽕나무1)

- 충청북도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별표1을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사항으로써 보호수 관리를 시·군에 위임하고 있지만,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할구역의 보호수 관리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,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총괄적 지원과 함께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호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(老木) 등의 보호수(이하 “보호수”)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하기에 조례로 제정함이 정당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없어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적합함.
- 조례 제정을 통해 추계된 소요예산은 매년 총 2.3억원 가량으로, 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며, 도내 보호수의 보존 증식과 지정 및 해제 신청 관리운영 등의 예산지원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.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보호수의 보호와 가치 공유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호수 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8조는 보호수의 관리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○ 조례안 예고('24. 1. 11. ~ 1. 1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본 조례는 '24년 1월 기준 12개 시·도가 제정·시행 중이며, 문제된 사항이 없음.

○ 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이며,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「산림보호법」 등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와 역사를 같이 해 온 보호수의 보호 가치를 높이고,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치 있는 수목자원에 대해 보호수의 지정·해제 신청이 시의 적절히 조치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충청북도는 보호수 관리에 대하여 시·군에 위임된 사무를 총괄 하여 지원 관리하는 제반사항을 구체화하고, 보호수 정비사업 등을 통한 보호수 보호 내실화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.